

강원관광대학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의 종류) 등록은 현금등록과 학과등록(수강 신청)으로 나눈다.

제 3 조 (수강신청의 의무)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현금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당해 학기 납입금은 소멸된다.

③ 수강신청서의 과목누락, 분반오기, 기타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강신청의 지도)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의 교과목 이수 및 수강신청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수강신청의 일반원칙) ① 수강신청은 학년 및 학기 순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은 매 학기 최저 15학점,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기별 15학점 미만 신청자는 당해 학기 성적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된다.

④ 강의 시간표에 강의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의 신청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지정된 분반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반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할 경우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타 학과 전공과목을 인접선택으로 신청할 경우 실험·실습·연습 및 세미나 과목은 선택할 수 없다.

⑦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동일계열의 수강 신청을 학점을 받을 수 없다.

⑨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교과목은 낙제(F)가 된다.

⑩ 복학생은 복학시점의 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에 따라야 한다.

⑪ 수강신청을 기간 중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과된 선택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⑫ 수강신청서에 오기 등으로 정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강신청 절차) ① 학생은 직접 강의시간표를 확인한 후 소속 계열(과, 전공) 사무실에서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신청한다.

1. 전공필수

2. 재수강(필수과목)

3. 전공선택

4. 일반선택과정(개별수강, 인접수강, 재수강[선택과목])

제 7 조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 전 1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수강신청 사항의 확인 및 정정)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수강신청 확인서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확인서 1부는 반드시 계열(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정정 기간은 개강 후 10일 이내로 하되, 학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 정정을 하지 못한 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일 이후 3주(21일) 이전에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강의시간표 변경(폐강, 분반, 합반 등)에 따라 수업시간이 중복된 경우
2. 수강신청서의 내용과 수강신청 확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제 9 조 (수강신청에 대한 제재)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잘못된 수강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제재한다.

1.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성적을 취소한 재이수 신청과목은 예외로 하다.

2. 수강신청 학점은 초과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말미 과목을 취소한다.

3. 해당 학년 보다 고학년 과목을 신청한 경우 고학년 과목을 취소한다.

다만, 조기복학(역학기 복학)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수업시간표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취소한다.

나. 필수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학년 과목을 취소한다.

다. 전공과목과 인접선택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접과목을 취소한다.

제 10 조 (복학생의 수강신청) 복학자의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8.03.12.)

1. 교과과정 개편 시 신 교과과정 실시일 이전 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구 교과과정에 의하며, 실시일 이후에 신청하는 과목은 신 교과과정에 따른다.

2. 구 신청과목 중 삭제되었던 필수과목이 변경 되었거나 폐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수 하도록 한다.(개정 2008.03.12.)

가. 학점이 변경 되었을 경우 그 학점 변경된 과목으로 이수한다. 단, 필수과목 삭제로 인한 미 졸업자는 변경 된 과목을 이수하여도 졸업학점에 미달인 경우 그 모자라는 학점 만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2.)

나.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과목이 폐강 된 경우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08.03.12.)

3. 1,2학기에 걸쳐 설강(속강과목)하던 필수과목이 한 학기로 변경 개설 강의하는 경우에 학점 미 취득 학기에 개설되었을 시 반드시 수강 이수하여야 한다.

4. 이미 취득한 과목은 상급학년에 다시 설강되더라도 이를 재수강 할 수 없다.

5. 휴·복학 이전에 해당 교과과정의 필수 과목을 다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 11 조 (대치과목 인정) ① 교과과정 개편 시 이전에 시행된 교과과정상에 중 폐과목된 과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교과과정 개편을 한 학과에서는 이전 교과과정의 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의 대치 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치과목인정서는 교과목의 유사성 및 전공의 세분화로 폐과목된 교과목과 관련성을 가진 과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대치과목은 학과 회의를 거쳐야 하며,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대치과목선정은 교과과정 개편과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치과목인정서의 양식은 서식 1호와 같다.

제 12 조 (자료의 보관) ① 수강신청서 원본은 교무처 1부, 학생 1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서 보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